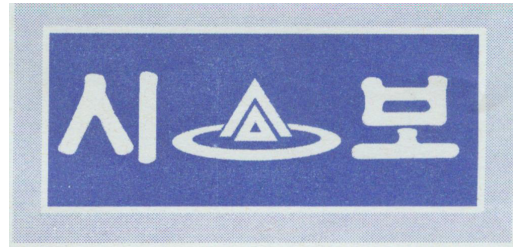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486호 2013. 2. 15.(금)

【조 례】

조례 제845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조례 제846호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7
조례 제84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조례 제848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조례 제849호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4

【규 칙】

규칙 제433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	----

【고 시】

제2013 - 25호	측량기준점 성과고시	41
제2013 - 29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2
제2013 - 30호	공주월미2농공단지 계획(변경) 정정 고시	44

【공 고】

제2013 - 98호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62
제2013 - 99호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5
제2013 - 165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3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2. 4.)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45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유구읍 문금2리 9반 다음에 10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유구읍 계의 반명 란 중 “175”를 “176”으로 하며, 의당면 “요룡리 1반, 2반”을 각각 “요룡1리 1반, 2반”으로, “요룡리 3반, 4반”을 각각 “요룡2리 1반, 2반”으로 하고, “청룡1리 1반, 2반”을 각각 “청룡5리 1반, 2반”으로, “청룡1리 3반, 4반”을 각각 “청룡1리 1반, 2반”으로, “청룡1리 5반, 6반”을 각각 “청룡5리 3반, 4반”으로 하며, “청룡3리 7반, 8반”을 각각 “청룡6리 1반, 2반”으로 하고, “청룡4리 5반”을 “청룡6리 3반”으로 하며, 의당면 계의 행정리·통명 란 중 “17”을 “20”으로 하고, 월송동 신관 21통 1반의 관할구역에 “공주시 신금2길 47(곰나루아파트 상가동)”을 추가하며, 월송동 신관 31통 7반의 관할구역에 “신관동 22-50~54, 22-123~128, 22-173, 22-176, 22-180, 22-186”을 추가하고, 월송동 신관 36통 11반 다음에 12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월송동 계의 반명 란 중 “118”을 “11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유구읍	문금2리	1반	양지뜸	80
		2반	양지뜸	40
		3반	뒷 골 157 · 주막거리	179
		4반	사장골	160
		5반	밤가시	210
		6반	골 말	260
		7반	불당골	1
		8반	적바위	520
		9반	용수골	320
		10반	금당마을	
계	32개리	<u>176개</u> 반		

읍·면·동명	행정리·동명	반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의당면	요룡1리	1반	요골(20번지선 일대)	
		2반	요골(25번지선 일대)	
	요룡2리	1반	오룡동(101번지선 일대)	
		2반	오룡동(84번지선 일대)	
	청룡1리	1반	문화마을	
		2반	새동네	
	청룡2리	1반	신청골, 양터골	
		2반	신성말	
	청룡3리	1반	신한임대아파트 101동 101호 ~ 806호, 신한임대아파트 상가일원	
		2반	신한임대아파트 102동 101호 ~ 806호	
		3반	신한임대아파트 103동 101호 ~ 812호	
		4반	신한임대아파트 104동 101호 ~ 814호	
		5반	신한임대아파트 105동 101호 ~ 810호	
		6반	신한임대아파트 106동 101호 ~ 810호	
	청룡4리	1반	신한임대아파트 201동 201호 ~ 810호	
		2반	신한임대아파트 202동 201호 ~ 810호	
		3반	신한임대아파트 203동 201호 ~ 806호	
		4반	신한임대아파트 204동 201호 ~ 806호	
	청룡5리	1반	위뜸, 고개넘어	
		2반	새뜸말, 안말	
		3반	와룡동	
		4반	와룡동(휴계)	
	청룡6리	1반	세광아파트 301동 101호 ~ 516호	
		2반	세광아파트 302동 101호 ~ 510호	
		3반	세광아파트 303동 101호 ~ 524호	
	계	20개리	84개반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신관 21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47(곰나루아파트상가동) 공주시 신금2길 47-1, 103동 101호~1402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2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3동 103호~1404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3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3동 105호~1406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4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3동 107호~1408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5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4동 101호~1502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6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4동 103호~1504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7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4동 105호~1506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8반	공주시 신금2길 47-1, 104동 107호~1508호(신관동, 곰나루아파트)
월 송 동	신관 31통	1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0동 101호~2002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2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0동 103호~2004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3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0동 105호~1506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4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0동 107호~908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5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1동 101호~1502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6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1동 103호~1504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7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1동 105호~906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신관동22-50~54, 22-123~128, 22-173, 22-176, 22-180, 22-186
		8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2동 10호1~2102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9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2동 103호~2104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10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2동 105호~2106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11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3동 101호~1502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12반	공주시 변영1로 194-7, 113동 103호~1504호 (신관동, 대아아이투빌아파트) 공주시 신금2길 31(대아아이투빌 상가)

읍·면·동명	행정리·통명	반명	관할구역(자연부락명 또는 번지)
월 송 동	신관 36통	1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1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2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2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3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2동 103~1503호, 104~1504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4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5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4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6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4동 103호~1503호, 304호~1504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7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5동 101호~1501호, 302호~15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8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6동 101호~1001호, 102호~10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9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7동 101호~1301호, 102호~13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10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8동 301호~1301호, 102호~1302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11반	공주시 신금2길 17, 508동 103호~1503호, 104호~1504호(신관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12반	신관동 1-29, 1-32,1-35, 산9-31, 1-40, 1-45, 22-10, 22-14, 22-33~35, 22-38, 22-143, 22-152, 22-197, 22-152
계	18개통	119개반	

공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2. 4.)
에서 의결된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46호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 팀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긴급개입 및 구조,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등 위기관리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등 아동·여성폭력 예방
3.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및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등 조사

제5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여성안전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 1명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6. 가족 지원시설
7.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10. 지역주민 대표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제3호·제4호·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이 회의에 부치는 사안
6.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사례관리팀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원은 실무업무의 특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3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 회의) 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2. 4.)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4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묘지· 화장시
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안치하거나”를 “안치하거나 안치함에”로 “공주하늘공원” 을
“공주나래원”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주시 관내(이하 “관내” 라 한다)지역, 대전
· 충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전 · 충남 ·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
2. 죽은 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4. 봉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에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 (제7조 관련)

(단위: m²)

명 칭	위 치	지 적
계	25개소	2,023,863
유구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산52	166,605
백교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산26	4,760
만천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산47	252,611
주봉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산74, 산74-2, 산74-3	68,635
목동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21-1, 산21-4	37,707
운암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52-1	190,116
신영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산71-1	20,727
삼각리 공동묘지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산121	110,685
내흥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0	18,744
중장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산26	11,504
양화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3-2	18,102
죽곡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산36	22,017
송곡리 공동묘지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산7-1	40,760
온천리 공동묘지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14-1	57,620
석장리동 공동묘지	공주시 석장리동 산15, 산15-2	21,454
요룡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산9, 산12-1	122,010
유계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70	127,835
가산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	62,479
화봉리 공동묘지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10-1, 묘173-5, 묘173-7	70,441
내촌리 공동묘지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산6-1, 묘185-2	89,814
대성리 공동묘지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산29-12, 산29-16	35,912
가교리 공동묘지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산10-1	143,794
봉정동 공동묘지	공주시 봉정동 산4	78,149
태봉동 공동묘지	공주시 태봉동 산9-1	242,380
월미동 공동묘지	공주시 월미동 묘395-8	9,002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화장시설	공주나래원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관내지역 거주자	관외지역	
				대전·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거주자	대전·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 거주자
화장시설		대 인 만 15세 이상(1구)	150,000	300,000	500,000
		소 인 만 15세 미만(1구)	120,000	250,000	500,000
		개장 유골(1구)	80,000	100,000	200,000
		죽은 태아(1구)	50,000	100,000	200,000
봉안시설		일반(1위, 15년)	500,000	1,000,000	1,000,000
		부부(2위, 15년)	1,000,000	2,000,000	2,000,000
		무연 유골(1위, 10년)	100,000	사용제한	사용제한
자연 장지	수목장	1위(15년)	300,000	500,000	500,000
	잔디장	1위(15년)	300,000	사용제한	사용제한
유택동산		1위	10,000	10,000	10,000
		죽은 태아	5,000	5,000	5,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뿌릴 수 있는 장소로 공주하늘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안치</p> <p>하거나 안치함에 -----</p> <p>공주나래원-----</p> <p>-----.</p>
<p>제20조(사용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역, 대전·충남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충남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p>	<p>제2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주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지역, 대전·충남·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전·충남·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④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u> 2. <u>죽은 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u> 3. <u>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u> 4. <u>봉안유골 : 사망당시 공부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경우</u>

공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2. 4.)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48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요 율 표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500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경력, 퇴직)증명	1통	4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부채자사실확인	1통	900	
(3) 소유사실확인	1통	800	
(4) 실수요자사실확인	1통	700	
(5)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1통	700	
(6) 관상수목자가사실확인	1통	3,000	
(7) 풍수해등으로인한 피해사실확인	1통	3,0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1필지 건축선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000	
(3) 표준주택설계도면	1필지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10. 01. 04.			
(2) 미과세증명	1통	800	
(3) 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4) 징수유예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삭 제)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채무불이행자열람, 등사(단,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계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료)	1통	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청구	1통	600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 (개정 '10.12. 27.)	1건	3,0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1필지	800	
○ 1필지 초과시마다	1필지	800	
○ 연도별추가시 1필지 1년당	1필지	2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동)	1주택당	800	
○ 1동 초과시마다	1주택당	800	
○ 연도별 추가시 1동 1년당	1주택당	2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호)	1주택당	800	
○ 1호 초과시마다	1주택당	800	
○ 연도별추가시 1호 1년당	1주택당	2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	
	칼라발급	1,500	
(6)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	1건	800	
2. 회계관계			
(1) 삭제(04. 9. 24)			
(2)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1,000만원이상)	1건	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대형점포(시장)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0,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신설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신설
(4) 석유판매업(일반 ·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1건	30,000	신설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신설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신설
(7)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신설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	신설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30,000	신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	신설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10,000	신설
(1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신설
(13)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신설
(14)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신설
(15)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1건	50,000	신설
4. 건설관계			
(1) 삭 제(00. 5. 25.)			
(2) 사설개도허가 및 측수변경허가 신청	1건	3,500	
(3)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 점· 사용)허가		공사비의1,000분의 1(용지 및 보상비 제외)	
(4)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신설
(5)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신설
(6)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신설
(7)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신설
5. 보건사회관계			
(1)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1건	5,500	
(2)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건	3,000	
(3) 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5)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	1건	30,000	
(6)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7)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10,000	개정
(8)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	개정
(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개정
(10)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1건	10,000	
(11)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800	
(12) 의료기관 개설 허가	1건	100,000	신설
(1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	신설
(14)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신설
(15)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	1건	40,000	신설
(1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	신설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개정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등록 변경신고	1건	5,000	
(5)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	20,000	
(6)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	신설
(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신설
7. 전기요금 감액신청시 주민등록에 의한확인	1건	500	
8. 부동산 중개업관계(신설 01. 5. 12)			
(1) 중개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1건	800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800	
(3) 중개업분소 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개정
(4)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신설
9. 체육시설업 관련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10. 교통·차량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신설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신설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신설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건	1,500	신설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신설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신설
11. 내수면어업 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신설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신설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가망어업)	1건	5,000	신설
(4)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신설
(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신설
(6) 내수면 유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신설

공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2. 4.)
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2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849호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이하 “위험도평가” 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해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공주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공주시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공주시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험도평가단에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등록 및 관리)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해제)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이 공주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에는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공주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 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주시 지역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경비 등)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제 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4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를 바랍니다.

□ 평가일시: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30cm×세로 25cm
2. 표지판 색: 노랑색(바탕)과 흰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별지 5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평가일시: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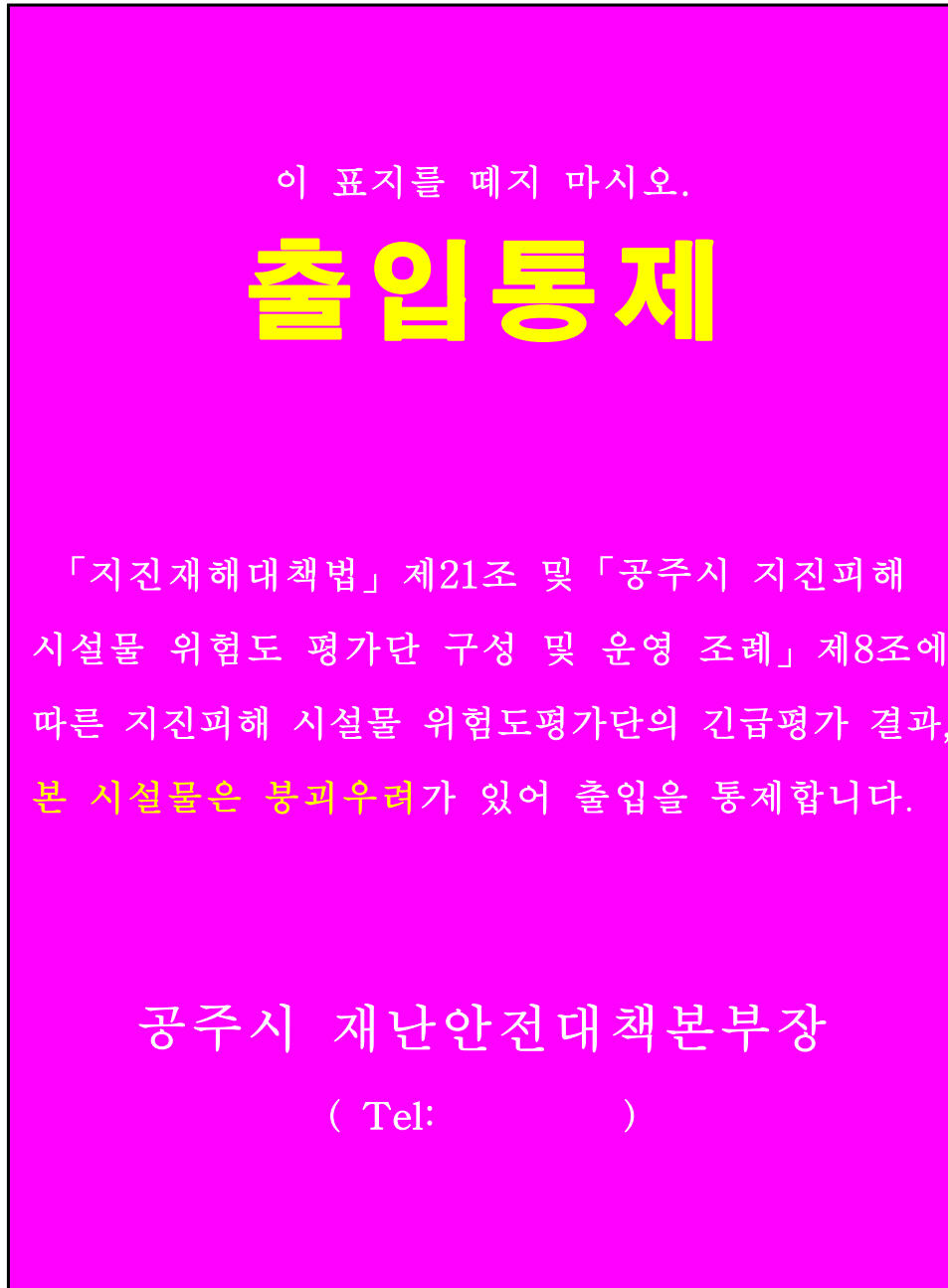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30cm×세로 25cm
2. 표지판 색: 초록색(바탕)과 흰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별지 6호서식]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30cm×세로 25cm
2. 표지판 색: 분홍색(바탕)과 흰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년 2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433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제8조제1항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로 한다.

제13조 중 “공주하늘공원” 을 “공주나래원”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사용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설치자란 및 관리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승계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기존사용자란 및 현재사용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시체·유골 화장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 망 연 월 일		
	화장장소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공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p>○ 시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1부 <p>○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분묘소재지 읍·면·동장 발행</p>					

제 호 시체·유골 화장 신고증명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사유 사 망 연 월 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공주시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제 호					처리기간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즉시
부(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산장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화장장소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공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p>○ 사산증명서,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p>					

제 호					
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 연월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산자(죽은태아)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공주시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 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

봉안 · 자연장 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 연월일	사인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화장·봉안·자연장 일 시		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사용기간			-	
죽 은 태 아	사산 연월일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화장·봉안·자연장 일 시		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사용기간	-
개 장 유 골	성 명		개 장 사 유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화장·봉안· 자연장 일시		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사용기간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예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사용조건]

-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및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사용허가 등) ① (생략)</p> <p>1. (생략)</p> <p>2.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u>별지 제4호 서식</u></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 별지 제8호 서식</u></p> <p>③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u>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u>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u> 사용하도록 한다.</p>	<p>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u>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u> -----.</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u>공주하늘공원</u>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 -----<u>공주나래원</u>----- -----.</p>

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측량 기준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02월 06일

공 주 시 장

1. 소 재 지 : 공주시 일원
2. 설치년월일 : 2013. 01. 29.
3. 점 수 : 4점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토지과
5.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6. 측량기준점 번호 및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지적도근점)

일련 번호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비고
				종선(X)	횡선(Y)		
1	지적도근점	11490	정안면 광정리 118	345469.15	211287.84	철재	
2	지적도근점	11496	정안면 광정리 123-1	345573.64	211341.91	철재	
3	지적도근점	11497	정안면 광정리 105-2	345714.02	211329.67	철재	
4	지적도근점	11498	정안면 광정리 110-1	345662.12	211230.61	철재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금흥동 41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도로) 결정(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재생과(041-840-8547), 교통과(041-840-28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2. 15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재생과 041-840-8547, 교통과 041-840-282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66	8	국지도로	71	금흥동418	대로 2-7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 8m 연장 : 7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차고지 이용차량들의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2) 자동차정류장

가)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	금흥동 418번지 일원	-	증)8,707	8,707	자연녹지지역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자동차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금흥동 418번지 일원 면적 : 8,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외 버스 주차장 및 정비소 운영 등을 위한 공주시 소유부지에 자동차정류장(공영 차고지) 신설

공주월미2농공단지 계획(변경) 정정 고시

1. 공주시고시 2013-17(2013.02.01)호로 고시된 공주월미2농공단지계획(지정·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종의 물건에 대한 고시가 누락되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농공단지계획(변경) 정정고시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23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3년 02월 15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주시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기반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건설하고자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농공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368-1일원
 - 나. 농공단지의 면적 : 72,670.9㎡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3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종 분 류	면적 (㎡)	구성비 (%)	비고
5개 업종	56,332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6,172	11.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88	20.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38	25.1	
C28 전기장비 제조업	4,726	8.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908	35.3	

유치업종 중분류 CODE :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 적용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41-5(신관동)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공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오홍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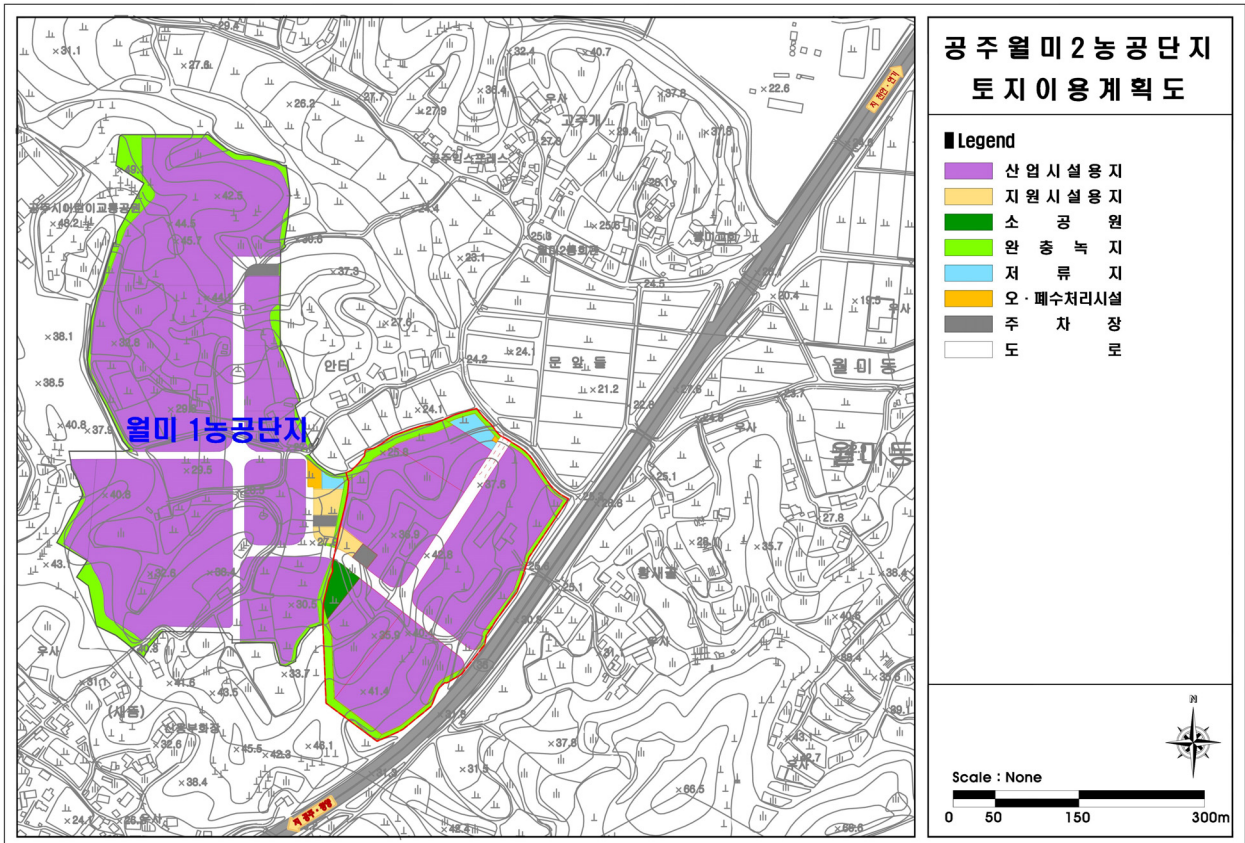
7.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구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비율 (%)	계	비율 (%)						
합계	53	100.0	72,670.9	100.0	35	67,526.0	17	2,075.0	1	3,069.9
전	10	18.9	48,531.0	66.8	10	48,531.0	-	-	-	-
답	16	30.2	8,829.0	12.1	11	8,564.0	5	265.0	-	-
임야	9	17.0	9,940.0	13.8	9	9,940.0	-	-	-	-
구거	8	15.1	1,296.0	1.8	3	405.0	5	891.0	-	-
도로	8	15.1	3,988.9	5.5	-	-	7	919.0	1	3,069.9
제방	2	3.7	86.0	0.1	2	86.0	-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72,670.9	100.0	
산업시설용지	56,332.0	77.4	
지원시설용지	619.0	0.9	
소계	15,719.9	21.7	
- 지류지	1,106.0	1.5	
- 오·폐수처리시설	33.0	0.1	펌핑장
- 공원	1,396.0	1.9	
- 완충녹지	6,059.9	8.4	
- 주차장	434.0	0.6	
- 도로	6,691.0	9.2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2	432	6,691	-	-	-	2	432	6,691	-	-	-
중로	2	432	6,480	-	-	-	2	432	6,480	-	-	-
기타	-	-	211	-	-	-	-	-	211	-	-	-

주 : 기타는 가각면적

나)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08 (665.5)	382-4답	368-5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중로	2	A	15	국지 도로	224	중로2-1	산4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주 : () 단지의 도로 연장을 포함한 도로 총연장임

다)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월미동 368-1번지	434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2) 공간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월미동 383번지 일원	1,39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나)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6,059.9	-	
	1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1번지 일원	1,830.9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2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56-1번지 일원	1,485.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3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70-1번지 일원	417.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4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5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3)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70-1번지 일원	1,10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4)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산45-3번지 일원	33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5)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산정

유치업종	계획면적 (㎡)	원단위 (㎡/천㎡·일)	계획용수량 (㎡/일)	비고
합 계	56,332		429.2	
C10 식 료 품 제 조 업	6,172	11.13	68.7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88	4.64	52.8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4,138	14.62	206.7	
C28 전 기 장 비 제 조 업	4,726	6.24	29.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908	3.59	71.5	

자료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안) 2008. 10』 환경부, 국토해양부

생활용수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인)	원단위(ℓ/인/일)	계획용수량(㎡/일)	비고
합 계	431	-	41.2	
산업용지	402	-	38.3	
산업시설	상근인구	363	100	36.3
	이용인구	39	50	2.0
지원시설용지	29	100	2.9	

전체 용수량 산정

구 분	합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 고
용수량	470.4	429.2	41.2	

나) 오·폐수처리계획

오·폐수량 산정

구 분	계획 오·폐수량(㎡/일)	비 고
합 계	305.3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폐수처리시설(펌핑장)을 통해 공주 월미1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생활 오 수	39.0	
공 업 폐 수	266.3	

다) 전력 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단위부하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합 계		-	-	18,217.8	
소 계		56,332	-	18,004.7	
산업 시설 용지	C10 식료품제조업	6,172	466	2,876.2	부지면적기준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88	214	2,437.0	부지면적기준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38	384	5,429.0	부지면적기준
	C28 전기장비 제조업	4,726	412	1,947.1	부지면적기준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908	267	5,315.4	부지면적기준
지원시설용지		929	196.4	182.4	연면적기준 (150%)
소 계		14,699	-	30.7	
공공 시설 용지	도로	6,691	-	27.5	부지면적기준
	주차장	434	-	1.8	부지면적기준
	유수지	1,106	-	-	
	오폐수처리시설	33	1,718	0.3	
	공원	1,396	-	1.1	부지면적기준
	녹지	5,039	-	-	

라) 통신시설계획

규모	회선기준	통신수요(회선)	비고
384(상근인구)	1.0회선/10인	50	여유율 30% 적용

마) 에너지 공급계획

구분	면적 (㎡)	원단위 (Gcal/㎡·년)	직·간접열비율		간접열 수요량 (Gcal/년)	비고
			직접열	간접열		
합계	56,332	-	-	-	16,276.4	
C10 식료품제조업	6,172	1.176	0.14	0.86	6,242.1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1,388	0.356	0.285	0.715	2,898.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4,138	0.325	0.318	0.682	3,133.7	
C28 전기장비제조업	4,726	0.449	0.673	0.327	693.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9,908	0.331	0.498	0.502	3,308.0	

바) 폐기물처리계획

- 농공단지 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3263톤/일(생활폐기물:0.31톤/일, 산업폐기물:3232톤/일)임
-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공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72,670.9	100.0	
관 리 지 역	소 계		100.0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72,670.9	100.0	

※ 일부편입토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 적(㎡)	비고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월미동 368-1번지 일원	72,670.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72,670.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2	432	6,691	-	-	-	2	432	6,691	-	-	-
종로	2	432	6,480	-	-	-	2	432	6,480	-	-	-
기타	-	-	211	-	-	-	-	-	211	-	-	-

주 : 기타는 가각면적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1	15	집산 도로	208 (665.5)	382-4답	368-5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종로	2	A	15	국지 도로	224	종로2-1	산4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주 : () 단지의 도로 연장을 포함한 도로 총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월미동 368-1번지	434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나)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월미동 383번지 일원	1,39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6,059.9	-	
	1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1번지 일원	1,830.9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2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56-1번지 일원	1,485.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3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70-1번지 일원	417.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4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5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 녹지 결정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 : 1,830.9㎡	
②	완충녹지	•면적 : 1,485.0㎡	
③	완충녹지	•면적 : 417.0㎡	
④	완충녹지	•면적 : 1,607.0㎡	
⑤	완충녹지	•면적 : 720.0㎡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월미동 370-1번지 일원	1,10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산45-3번지 일원	33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56,332	-	56,332	
산업시설용지	산업1	18,864	1	14,138	
			2	4,726	
	산업2	19,908	1	19,908	
	산업3	17,560	1	11,388	
			2	6,172	

나) 지원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지원1	619	1	619	

다) 공공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1,573		1,573	
공공시설용지	공공1	1,106	1	1,106	유수지
	공공2	33	1	33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3	434	1	434	주차장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3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3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 또는 경관기능의 식재를 할 것	
		건축선	중로2-A호선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중로, 국도 36호선변 5m 건축한계선 지정	

나) 지원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시설용지 지원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건축선	-	

다) 공공시설용지

○ 우수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시설용지 공공1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배 치	-	
		건축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2	공공시설용지 공공2	용 도	허용용도	공주 월미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장에서의 연계처리를 위한 펌핑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배 치	-	
		건축선	-	

○ 주차장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3	공공시설용지 공공3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2조제11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	
		건축선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가. 토지

구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변경	합 계		48필지	-	85,956.0	71,650.0						
			53필지	-	85,922.8	72,670.9						
기정	1	월미동	201	답	1,614.0	1,614.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변경	2	월미동	202-2	구	298.0	9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2-6		94.0	9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미등기
기정	3	월미동	202-3	답	457.0	457.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4	월미동	356-1	답	1,223.0	1,223.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 377-2				
기정	5	월미동	367-1	구	106.0	10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6	월미동	367-2	전	834.0	834.0	오광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91-3 현대아파트 102-405				
기정	7	월미동	368-1	전	14,614.0	14,614.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8	월미동	368-2	전	10,699.0	10,699.0	오용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4동 1102호(상대동, 도안신도시트리플시티아파트)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9	월미동	368-3	전	3,622.0	3,622.0	오병일	공주시 옥룡동 245-28				
기정	10	월미동	368-4	전	3,622.0	3,622.0	오순자	공주시 월미송곡길76(월미동)	공주 원예농업협동조합	공주시산성동 180-18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변경	11	월미동	368-5	전	1,449.0	1,449.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미등기
			368-7	전	1,227.0	1,227.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미등기
			382-4	답	294.0	29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외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미등기
			424-1	도	47.0	47.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변경			450	도	16,321.8	3,069.9	공주시	공				
기정	12	월미동	368-6	전	6,897.0	6,897.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3	월미동	368-8	전	4,752.0	4,752.0	윤순수	대전시 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108-1201				
기정	14	월미동	368	전	1,266.0	1,266.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5	월미동	369-1	답	1,408.0	1,408.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16	월미동	369	답	136.0	136.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17	월미동	370-1	답	572.0	572.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18	월미동	370-2	구	205.0	20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19	월미동	371	전	995.0	995.0	오순자	공주시 신관동19 주공아파트401-1304				
기정	20	월미동	372	답	338.0	338.0	허경연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1-5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공주시신관동 601-8	근저당권	
기정	21	월미동	373-1	전	1,230.0	1,230.0	허동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파트 107-17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 1가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기정	22	월미동	373-2	제	76.0	76.0	허동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파트 107-1703				
기정	23	월미동	374-1	답	132.0	132.0	허동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파트 107-17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 1가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기정	24	월미동	380-2	답	2.0	2.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기정	25	월미동	381-3	답	59.0	59.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기정	26	월미동	382-2	제	10.0	10.0	박창현	공주시 월미동 282				
기정	27	월미동	382-3	답	493.0	77.0	국토해양부	국				
변경			382-8	답	75.0	75.0		국				미등기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28	월미동	382-5	담	192.0	192.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9	월미동	382-6	담	93.0	93.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기정	30	월미동	382-7	담	36.0	36.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기정	31	월미동	382	담	271.0	271.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32	월미동	383	담	2,221.0	2,221.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월미동	412	구	1,566.0	259.0	농림수산식품부	국					미등기
412-3			19.0		19.0								
412-4			204.0		204.0								
412-5			39.0		39.0								
기정	변경 변경 변경	월미동	414	도	1,282.0	739.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414-10			657.0		657.0								
414-11			84.0		84.0								
기정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월미동	420	구	730.0	667.0	농림수산식품부	국					미등기
420-9			99.0		99.0								
420-10			434.0		434.0								
420-11			135.0		135.0								
기정	변경 변경	월미동	424-2	도	206.0	113.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424-3			101.0		101.0								
기정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월미동	424	도	38.0	38.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424-4			10.0		10.0								
424-5			19.0		19.0								
424			9.0		9.0								
기정	변경	월미동	산41	임	3,239.0	757.0	오석균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미등기
기정	변경	월미동	산41-2	임	1,291.0	1,291.0							
기정	39	월미동	산42-2	임	1,983.0	1,983.0	조미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푸르지오 110-702					
기정	40	월미동	산42	임	3,322.0	3,322.0	조대형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87-5 원흥타운-703					
기정	41	월미동	산44-2	임	298.0	298.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 377-2					
기정	42	월미동	산44-3	임	198.0	198.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 377-2					
기정	변경	월미동	산45-3	임	893.0	77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미등기
산45-6			702.0		702.0								
기정	44	월미동	산45-4	임	992.0	99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변경 변경 변경	월미동	산45-5	임	9,719.0	643.0	오병길	공주시 월미동 136					미등기
산45-7			450.0		450.0								
산45-8			704.0		704.0								

나. 지장물(물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48종						
1	월미동	368-4, 371	주택1	세멘브릭, 스레이트	64.31 ㎡	오순자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송곡길 76(월미동)	
2	월미동	368-4, 371	주택틀레 포장	콘크리트	39.27 ㎡	"	"	
3	월미동	368-4, 371	가추1	쇠파이프, 목재, 양철판넬	72.45 ㎡	"	"	
4	월미동	368-4, 371	주택2	세멘브릭, 양철판넬	37.18 ㎡	"	"	
5	월미동	368-4, 371	가추2	목재, 양철판넬	27.06 ㎡	"	"	
6	월미동	368-4, 371	축사1	경량철골, 스레이트	200.53 ㎡	"	"	
7	월미동	368-4, 371	축사2	경량철골, 스레이트	54.00 ㎡	"	"	
8	월미동	368-4, 371	양계장	목조, 그물망, 스레이트,	9.67 ㎡	"	"	
9	월미동	368-4, 371	담		7 마리	"	"	
10	월미동	368-4, 371	창고겸 장독대	세멘브릭, 슬라브	11.23 ㎡	"	"	
11	월미동	368-4, 371	관정	소공	1 식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	월미동	368-4, 371	외부계단	콘크리트(W=0.63)	1 식	오순자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송곡길 76(월미동)	
13	월미동	368-4, 371	평상	목재(2.94*1.79)	1 식	"	"	
14	월미동	368-4, 371	바닥포장	보도블럭	7.17 ㎡	"	"	
15	월미동	368-4, 371	화단1	돌	6.37 ㎡	"	"	
16	월미동	368-4, 371	화단2	돌	6.12 ㎡	"	"	
17	월미동	368-4, 371	화단3	돌	8.85 ㎡	"	"	
18	월미동	368-4, 371	정화조	세멘콘크리트 (1.5*1.0)	1 식	"	"	
19	월미동	368-4, 371	대문	슬라브, 철 (3.11*2.0(H))	1 식	"	"	
20	월미동	368-4, 371	담장	세멘블럭 (H=1.8)	24.0 m	"	"	
21	월미동	368-4, 371	대나무군		782.00 ㎡	"	"	
22	월미동	368-4, 371	방나무1	B=0.05, H=2.8	2 주	"	"	
23	월미동	368-4, 371	방나무2	B=0.3, H=10.0	30 주	"	"	
24	월미동	368-4, 371	감나무	B=0.3, H=10.0	5 주	"	"	
25	월미동	368-4, 371	호두나무	B=0.3, H=10.0	4 주	"	"	
26	월미동	368-4, 371	살구나무	B=0.2, H=6.0	1 주	"	"	
27	월미동	368-4, 371	은행나무	B=0.5, H=10.0	2 주	"	"	
28	월미동	368-4, 371	두릅나무	H=2.0	21 주	"	"	
29	월미동	368-4, 371	주목	W=1.5, H=1.7	1 주	"	"	
30	월미동	368-4, 371	개나리	R=0.1, H=1.7	1 주	"	"	
31	월미동	368-4, 371	연산홍	W=2.4, H=1.8	1 주	"	"	
32	월미동	368-4, 371	쥐똥나무	W=0.5, H=0.5	2 주	"	"	
33	월미동	368-4, 371	소나무	W=2.4, H=2.5	1 주	"	"	
34	월미동	368-4, 371	꽃나무	H=1.7	1 주	"	"	
35	월미동	368-4, 371	기타수목1	R=0.8, H=2.0	1 주	"	"	
36	월미동	368-4, 371	기타수목2	B=0.04, H=1.7	1 주	"	"	
37	월미동	368-4, 371	기타수목3	B=0.04, H=4.0	1 주	"	"	
38	월미동	368-4, 371	기름보일러	유류탱크(1000L) 포함	1 식	"	"	
39	월미동	368-4	영농보상		3,190 ㎡	"	"	
40	월미동	371	영농보상		875 ㎡	"	"	
41	월미동	372	영농보상		338 ㎡	허경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1-5	
42	월미동	373-1	영농보상		1,230 ㎡	허동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이파크 107-1703	
43	월미동	374-1	영농보상		132 ㎡	"	"	
44	월미동	373-2	농업용전기		1 식	"	"	
45	월미동	373-2	관정	소공	1 식	"	"	
46	월미동	373-2	관정함		1 식	"	"	
47	월미동	산41-2	방나무	10년생 (H=5.0)	22 주	오석균	공주시 우성면 신흥리 138	
48	월미동	산41-2	매실나무	8년생 (H=2.5)	4 주	"	"	

11. 지형도면 고시도면(축척 1/1,000) : 계획 생략

공주시 공고 제2013 - 98호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 폐지규칙안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96년에 제정된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 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전문개정 [2011.8.4]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개정 [2008.2.29.] 에 따라 재정운영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및 일률적인 방법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우리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상황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 재정공시 운영 지침에 의해 정해진 서식으로 전년도 결산분에 대한 시 전체의 재정운용현황을 매해 8월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시 자체 규칙으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공주시 재정운용 상황의 공개 규칙』 폐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기관·단체는 201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기획담당관)
- 연락처 : 전화 : 041) 840-2028 FAX 041) 840-27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3 - 99호

공주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전부개정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상위법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단순화 하여 상위법령과 자체 규칙간 개정 시간차에 따른 혼선의 방지 및 원활한 투자심사 업무 추진을 위함
-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과 상위 법령과의 내용 비교

구 분	목 적	위원회구성	심사대상	심사범위 등
상위법령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목적 정의	위원회 구성의 의무만 규정	대상사업의 세부 규정 명시	심사범위, 일정, 기타 세부규정 명시
공 주 시 규 칙	상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 부규정 명시	상 동	상 동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 및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위원회 구성 및 임무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인원, 구성원 자격,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위원회 운영 (안 제3조)

- 위원회 운영 시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수당 및 여비 지급 및 기타사항(안 제4조, 제5조)

- 심의에 따른 심의료 지급 및 규정외 사항의 상위법령 적용에 관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기관·단체는 201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기획담당관)
- 연락처 : 전화 : 041) 840-2028 FAX 041) 840-27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공주시 재정 투·용자사업 심사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투자심사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

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10.12.31>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이 준 원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관하수종말처리장 내 시립야구장이 조성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범위에 「시립야구장」을 추가(안 제2조 제1호)
- 시립야구장 사용관련 공주시 관외 거주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제한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 시장은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4조)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를 우선한다.

○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시립야구장의 사용료를 규정(안 제10조)

○ 체육시설의 전용료의 납부방법 개정(안 12조 제1항)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 허가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3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주소 : 314-020 공주시 웅진동 283)

o 전화 : 041-840-2464

o FAX : 041-854-2115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육시설”이라 함은”을 ““체육시설” 이란”으로, “국궁장 등을 말하며 “부대 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을 “국궁장·시립야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 시설”이란 그에 딸린”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을 ““시설의 사용”이란”으로, “방송(텔레비전 포함)”을 “방송(텔레비전 포함)·”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자”라 함은”을 ““전용자”란”으로 ““전용료”라 함은”을 ““전용료”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이용료”라 함은”을 ““이용료”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호 중 ““단체입장”이라 함은”을 ““단체입장”이란”으로, “인솔장 의 하여 동시”를 “인솔자와 함께”로 한다.

같은 조 제8호 중 ““기본액”이라 함은”을 ““기본액”이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학생”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중·고등학생, “군인”이라 함은”을 ““중학생·고등학생,

“군인”이란”으로, ““어른”이라 함은”을 ““어른”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외의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개인 또는 단체를 우선한다

같은 조 제 1호 중 “시의 국경·조등 행사”를 “공주시의 각종 행사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케”를 “문란하게”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날로부터 1월”을 “날부터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전용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서 발급일 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또는 사용 변경 허가일이 허가일 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주·야간”을 “주간·야간”으로, “받아쓸 때에는”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불우청소년·어린이·65세 이상의 사람·군인·장애인·의사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경·조 행사”를 “각종 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출입증”을 “출입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10조 따른”을 “제10조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민사”를 “민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변상케”를 “변상하게”로 한다.

제20조 제목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전”을 “사전에”로 한다.

제2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따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기본료

<단 위 : 원>

경기장별		구 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시민운동장	트랙	· 체육경기	1회 4시간 이내	20,000		30,000		
		· 체육경기 이외	1일 4시간 이내	50,000		70,000		
	필드	· 체육경기	1회 4시간 이내	40,000		60,000		
		· 체육경기 이외	1일 4시간 이내	100,000		150,000		
백제체육관		· 체육경기	1회 4시간 이내	40,000	60,000	60,000	75,000	
		· 체육경기 이외	1일 4시간 이내	100,000	180,000	150,000	240,000	
국궁장			1일	20,000		30,000		
시립야구장		· 체육경기(관내거주자)	1게임 2시간30분 기준	40,000	60,000	60,000	75,000	
		· 체육경기(관외거주자)	1게임 2시간30분 기준	40,000	60,000	120,000	150,000	
		· 체육경기 이외	1일 4시간 이내	100,000	180,000	150,000	240,000	

※ 백제체육관을 조기 사용할 때는 주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을 징수

2. 이용료(1인기준)

<단 위 : 원>

경기장별	구 분	연습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시민운동장 (트랙)		개인	1회 3시간 이내	2,000	단체는 20인 이상
		단체		1,400	
백제체육관		개인 단체	1회 2시간 이내	1,000 700	단체 · 배구: 12인 이상 · 농구: 10인 이상 · 핸드볼: 14인 이상 · 배드민턴: 4인 이상 · 탁구: 4인 이상 · 기타: 10인 이상
국궁장		개인	1회	1,000	
시립야구장		개 인	1회 2시간 이내	2,000	단체는 10인 이상
		단체(관내 단체) 단체(관외 단체)		1,500 2,000	

3. 중계방송 기본액

<단 위 : 원>

종 류	구 분	중 계 방 송 료		비 고
		TV	라디오	
프로 경기	·국제경기	50,000	30,000	
	·국내경기	30,000	20,000	
아마추어 경기	·국제경기	50,000	30,000	
	·국내경기	30,000	20,000	
체육이외 행사	1회	80,000	50,000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료의 2분의 1 해당액		
경기 또는 촬영		TV중계방송료와 동일		

4. 상행위 사용료

<단 위 : 원>

구 분	사 용 료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광고행위	1개당 1일간 5,000원(단,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기타 (선전광고게시 등)	규 격	기 간	금 액	비 고
	대형 (길이 2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1년간	300,000	폭은 경기장 실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에서 지정
		동일행사기간	60,000	
	중형 (길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1년간	200,000	
		동일행사기간	40,000	
	소형 (길이 10미터 미만)	1년간	100,000	
동일행사기간		20,000		
매점·스낵코너 (백제체육관)	1일 1회 평당 5,000			

5. 부속시설 사용료

<단 위 : 원>

구 분	음향시설(마이크)	전광판	냉·난방	전기료
경기장별				
시민운동장	· 기본료 30,000 · 추가(개당) 5,000 (기본은 1회 2개 기준)			
백제체육관	· 기본료 30,000 · 추가(개당) 5,000 (기본은 1회 2개 기준)	50,000 (1회)	기본료(15,000) +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가격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시립야구장	· 기본료 30,000 · 추가(개당) 5,000 (기본은 1회 2개 기준)	50,000 (1회 2시간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제3조제2항 관련)

1.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2. 사용허가의 시설

경 기 장 별	목 적	사 용 기 간				비 고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3. 사용허가의 부대시설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설비명	수량

4. 관람권 발행

구분	매수 (1매당)	금액	구분	매수 (1매당)	금액
특별 관람권			단 체	어른	
어른 관람권				군인, 청소년	
군인, 청소년				어린이, 경로대상	
어린이, 경로대상			초 대 권		

5. 사용료

구 분	금액(기본액)	산 출 기 초	비 고

6. 사용조건

- 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체육시설 전용허가를 득한 후 전용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시민운동장·백제체육관·국궁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p> <p>3. “전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체육시설”이란 ----- ----- 국궁장·시립야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딸린 ----- -----.</p> <p>2. “시설의 사용”이란 ----- ----- 방송(텔레비전 포함)·----- -----.</p> <p>3. “전용자”란 ----- ----- ----- “전용료”란 ----- -----.</p> <p>4. “이용자”란 ----- ----- ----- “이용료”란 ----- -----.</p> <p>5. “관람자”란 ----- ----- “관람료”란 ----- -----.</p> <p>6. “사용자”란 ----- ----- “사용료”란</p>

현행	개정안
<p>합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 -----.</p>
<p>7. “단체입장”이라 합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u>인솔자에 의하여</u> <u>동시 입장하는 것</u>을 말한다.</p>	<p>7. “단체입장”이란 ----- -----인솔자와 함께-----.</p>
<p>8. “기본액”이라 합은 별표 중 전용기본료를 말한다.</p>	<p>8. “기본액”이란----- -----.</p>
<p>9. 관람자의 구분중 “어린이”라 합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학생”이라 합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이라 합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어른”이라 합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p>	<p>9. -----“어린이”란 ----- -----“청소년”이란 ----- -----중학생·고등학생, “군인”이란----- -----“어른”이란----- ----- -----.</p>
<p>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u>시장</u>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p>	<p>제3조(사용허가) ① ----- ----- -----따른-----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p>

현행	개정안
<p>야 한다.</p> <p>1. (생략)</p> <p>2. 시설의 <u>개·보수</u></p> <p>3. (생략)</p> <p>제7조(사용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4. <u>사용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할 때</u></p> <p>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환자임이 확인된 사람</p> <p>2. ~ 3. (생략)</p> <p>4. 경기장 질서를 <u>문란케</u> 하는 사람</p> <p>5. (생략)</p> <p>제11조(전용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용자”라 한다)는 전용하고자 하는 <u>날로부터 1월</u>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u>의한</u>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시설의 <u>개수·보수</u></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의제한)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u></p> <p>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u>각 호의</u>----- ----- -----.</p> <p>1. ----- <u>사람</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문란하게</u>-----</p> <p>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전용자) ----- ----- ----- <u>날부터 1개월</u>----- ----- <u>따른</u>----- -----</p>

현행	개정안
<p>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전용료의 납기) ① 체육시설의 전용을 허가 받은자는 허가서를 발급 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아쓸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 2. 전국체전·도민체전·소년체전 등 도 및 시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행사 	<p>----- -----.</p> <p>제12조(전용료의 납기) ① 체육시설의 전용을 허가 받은 자는 허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또는 사용변경 허가일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주간·야간 ----- ----- 받은 경우에는 ----- -----.</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공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현행	개정안
<p>3. 불우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경로자·군인들을 위한 행사</p> <p>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p> <p>5. (생략)</p> <p><신설></p> <p>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p>	<p>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p> <p>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p> <p>3. 불우청소년·어린이·65세 이상의 사람·군인·장애인·의사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p> <p>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5조(입장권) ① ----- ----- -----각 호의----- -----.</p> <p>1. -----</p>

현행	개정안
<p>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p> <p>2. (생략)</p> <p>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한 사람</p> <p>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p> <p>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p> <p>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p> <p>③ (생략)</p> <p>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p>	<p>--- 각종 행사 ---</p> <p>---</p> <p>2. (현행과 같음)</p> <p>3. -----출입증을-----</p> <p>-----</p> <p>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p> <p>② -----다른-----</p> <p>제10조의 사용료에 따라 -----.</p> <p>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p> <p>-----</p> <p>-----</p> <p>-----</p> <p>-----</p> <p>-----</p> <p>② -----</p> <p>-----</p> <p>----- 민사상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변상하게 -----.</p>

현행	개정안
<p>제20조(추징)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설비·용구·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p>	<p>제20조(추가 징수) ----- ----- ----- ----- -----.</p>
<p>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생략)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청권)·임원증·선수증 등은 <u>사전</u>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전에</u> ----- -----.</p>
<p>제24조(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따로</u>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4조(시행규칙) -- <u>조례의</u> ----- ----- <u>규칙</u> ----- -----.</p>